광명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

제정 2014. 10. 17 조례 제2030호 일부개정 2020. 3. 25 조례 제2584호(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명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·서비스 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 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규제 신고고객 보호·서비스헌장"(이하 "헌장"이라 한다)이란 광명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서 제공하는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규제 신고고객 보호"란 규제개선, 규제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 거나 제보하는 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.
- 3. "규제 신고고객 만족도"란 헌장 이행과 관련하여 시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(직속기관,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)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4조(헌장의 기본원칙) 헌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 와 같다.
 - 1.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
 - 2.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
 - 3.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 홍보의 원칙
 - 4.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
 - 5. 규제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
- 제5조(헌장의 내용) 규제 신고고객 보호·서비스를 위한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.

- 제6조(헌장의 공표 및 홍보) ① 헌장은 시보에 게재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한다.
 - ② 광명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.
 - 1. 시보 게재
 - 2. 언론매체 홍보
 - 3. 홍보자료 고객 배포
 - 4. 각종 행정자료에의 활용
 - 5. 시 홈페이지 게시
- 제7조(헌장의 개정) ① 시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.
 - ② 헌장의 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전절차를 거쳐야 한다.
 - 1. 고객 및 시 소속 공무원의 의견 수렴
 - 2. 광명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
- 제8조(헌장의 실천) ① 시 소속 공무원들은 헌장을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 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9조(잘못된 서비스의 시정) ① 시 소속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 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, 전화, 전자우편,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접수하여야 한다.
 -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 소속 각 부서 또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따른 접수나 제2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있는 시 소속 각 부서의 부서 장은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·조사하고, 관련업무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관련업무 부서장은 즉시 시정조치하고, 관련내용을 규제개혁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발 방지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10조(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)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헌장의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11조(포상 및 우대) 이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게는 포상하거나,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. 〈개정 2020. 3. 25〉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0. 3. 25 조례 제2584호,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〈개정 2020. 3. 25〉

전 장 (제5조 관련)

광명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

우리 광명시 전 공무원은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 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

- 1. 우리는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기업규제, 일상생활규제,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을 수시로 정비·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- 1. 우리는 기업규제개선, 생활규제개선,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개선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보하는 고객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.
- 1. 우리는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.
- 1. 우리는 규제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고객이 불이 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 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- 1. 우리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평가결과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은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.
- 1. 우리는 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이행하는 전 과정에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 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.